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발급 14일, 재발급 5일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사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발급	응시번호		합격증번호		합격연도		
	출신학교				졸업일자		
[]재발급	신청급수	[] 1급 [] 2급 [] 3급	자격증번호		교부연월일		
	신청사유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1항(같은 법 제7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 발급 신청 시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사본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2)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다.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라.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출하지 아니함) 1부 3.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2장	수수료 발급: 없음 재발급: 수입인지 2,000원
	■ 재발급 신청 시 1.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1부	

자격증 [] 발급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자격종별	
성명		생년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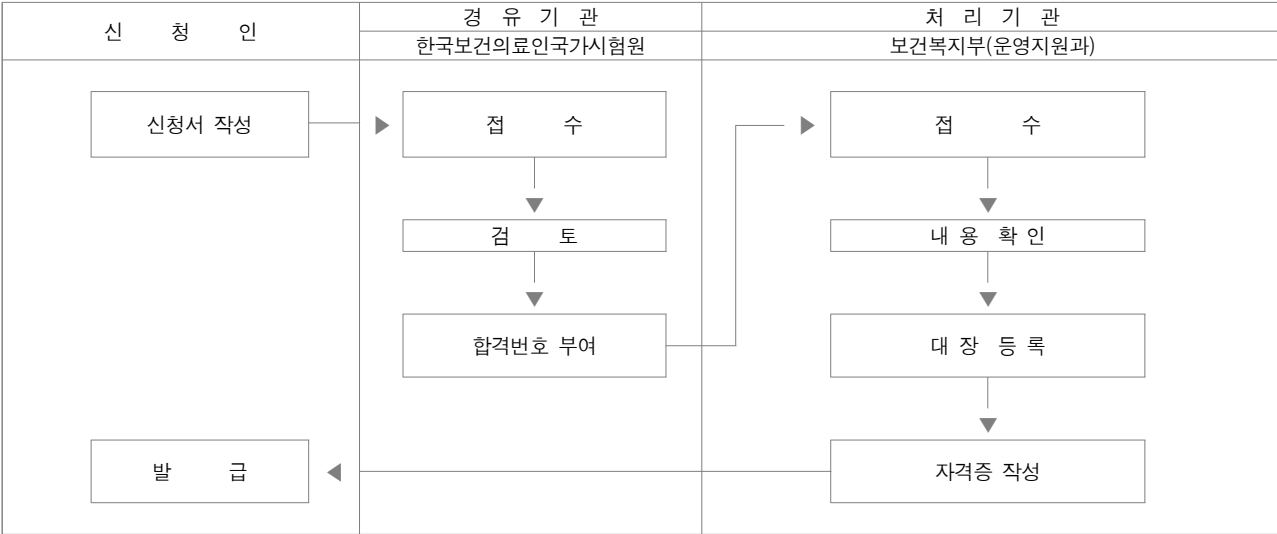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처리절차

발급 신청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재발급 신청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